

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발의년월일 : 1995. 7.

발의자 : 홍이식 의원 외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 의장단의 임기에 준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특별위원회의 남설과 상설화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기준, 활동기간,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등의 규정을 명시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특별위원회 설치기준, 활동기간,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등 규정을 명시함.
(안 제7조)
- 나.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기에 관한 특례 규정 (부칙 제2항)

3. 참고사항

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3

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(특별위원회) 중 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- ② (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장 등의 임기에 관한 특례) 이 조례 시행후 구성되는 의회의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.

신.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 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전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~ ③ "생 략"</p> <p>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전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</p> <p><u>"신 설"</u></p>	<p>제7조 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 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~ ③ "현행과 같음"</p> <p>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

검 토 보 고 서

□ 조 례 명

- 화순군의회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□ 주 요 내 용

- 특별위원회 설치기준, 활동기간,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규정 구체적 명시 (안 제7조)

- 설치기준 (안 제1항)

- 현 행 : 특별한 안전 심사 목적으로 본회의 의결로 구성
- 개 정 :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구성

- 활동기간 (안 제4항)

- 현 행 : 위원회 심사안건이 본회의 의결시까지 존속
- 개 정 : 활동기간 명시 다만,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

- 결과보고서 (안 제5항)

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 본회의에 제출 (신설)

-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기에 관한 특례 규정 (안 부칙 제2항)

-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 (임기 2년)에 불구하고 의장단 임기에 준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기 1년 6월로 함. (신설)

□ 개 정 사 유

-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 (임기만료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)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 (특별위원회 설치)의 규정이 '95. 7. 1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 개정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 개정(안)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